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3. 1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현행 구세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여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세등을 납부했음을 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, 불필요하게 민원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납부여부를 알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 (안 제10조)

### 3. 관계법령

지방세법 제3조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중 “(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)”을“(부과사실등의 신고)”로 하고 본문중 “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부과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